

2020년 도 문화재 위원회

제11차 순재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0. 12. 22.(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단죄문 등 설치	
3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태양광 시설 설치	
4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형물 설치	
5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6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7	「전남대학교 용봉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사항】

8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9	「윤정사 오층석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0	「제주시 일도일동 고한봉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1	「김재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2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3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보고사항】

14	국가등록문화재(동산 분야)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결과 보고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1.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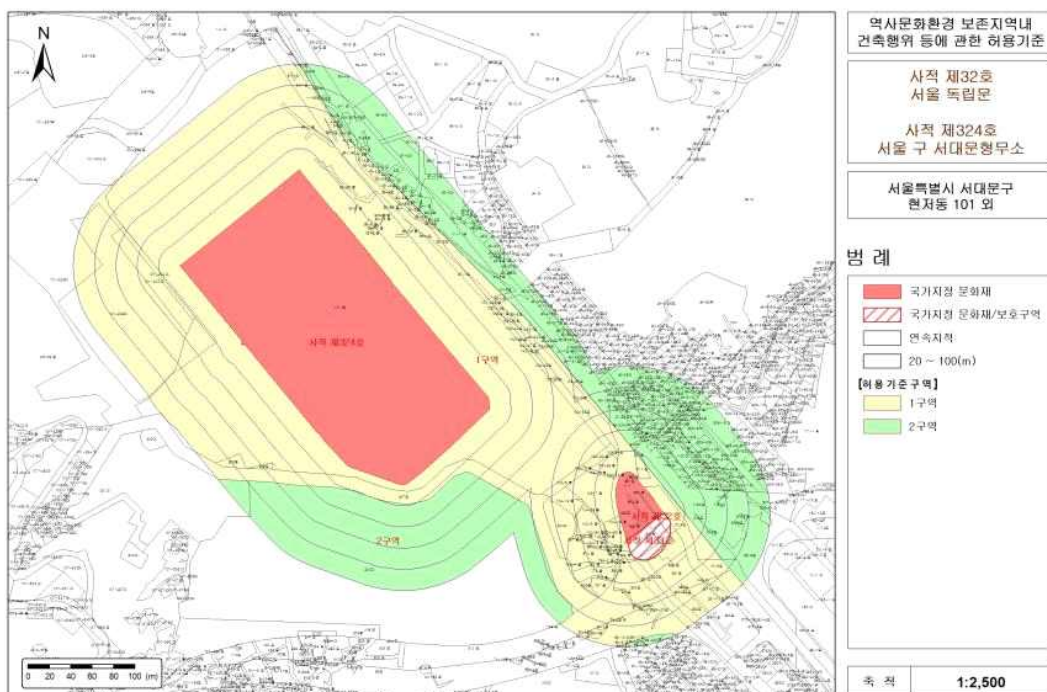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및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구역 확대('20.5월)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과 「서울 독립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 등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63.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 '88.2.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3) 세부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조정 : 서울 독립문 및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지형도면>



<조정 : 서울 독립문 및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허용기준 내용>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에 한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2.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단죄문 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단죄문 등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목포 일본영사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단죄문, 단죄비 등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문화연대
- (2) 대상문화재명 :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 '81.9.25.)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문화재보호구역 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7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0.2m
- 신청내용 : 단죄문 및 단죄비 등 설치

구분	단죄문	단죄비	비고
설치위치	문화재보호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구역)	
설치규격	25cm×5cm×80cm	23cm×80cm×63cm	화강석
설치수량	1개	1개	

3.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태양광 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유연옥(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 2길 31-18)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87.7.18.)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 1길 146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3-7번지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지붕 17m이하, 경사 21m이하)
 -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150m
 - 세부내용 : 태양광 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건축물 지붕에 설치
 - 설치규격 : 태양광 구조물 높이 0.174m~0.299m, 태양광 모듈 78.3m²
 - ※ 기존 건축물(5.3m~3.68m) 및 태양광 구조물(0.174m~0.299m) 합산 높이 : 5.474m~3.979m

4.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 보호구역 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익산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87.7.18.)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 1길 146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92-9번지 일원(문화재보호구역)
- 세부내용 : 조형물 설치(라파엘호 설치)
 - 사업면적 : 344m²
 - 조형물(라파엘 호) 규격 : 13.5m×4.8m×2.1m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5.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10.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2건 2점	○ 성당신축기: 23.5 × 17.6cm ○ 건축허가신청서: 25.7 × 18cm	○ 성당신축기 : 1955~1957년 ○ 건축허가신청서 : 1955년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군산 둔율동 성당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9.12.) : 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북도→문화재청)
 - ('19.11.1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5.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
 - 사유 : 군산 둔율동 성당 공사설계도 보존상태 등 추가조사 후 재검토
 - ('20.10.23.) : 관계전문가 추가조사 실시
 - ('20.10.27.)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11.6.~12.6.(30일간) * 의견 없음

6.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10.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25(항남동 241-1번지)
 - 소 유 자 : 경상남도 통영시
 - 수 량 : 1동(2층)
 - 건축면적 : 169.56㎡(건축물대장)
 - 연 면 적 : 306.49㎡
 - 건립시기 : 1936년(건축물대장)
 - 구 조 : 목조, 기와 지붕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0.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남도→문화재청)
 - ('20.8.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9.22.) : 제8차 근대분과위원회 보류
 - 사유 :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자료 추가 조사
 - ('20.10.21.) : 보완자료 제출(양성소 기능역할 및 이중섭 관련 사실 확인 자료)
 - ('20.9.8.) : 제9차 근대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11.6. ~ 12.7.(30일간) * 의견 없음

7. 「전남대학교 용봉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용봉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10.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전남대학교 용봉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전남대학교총장
- (2) 대상문화재명 : 「전남대학교 용봉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 소 유 자 : 교육부(전남대학교)
 - 수 량 : 1동
 - 건축면적 : 798.78㎡(건축물대장/5층)
 - 연 면 적 : 2,540.76㎡
 - 건립시기 : 1957년
 - 구 조 : 시멘트벽돌조(건축물대장)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6.25.) : 근현대 교육시설 문화재 등록 권고(문화재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 ('18.9.7.) :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광주광역시 북구청 → 문화재청)
 - ('20.5.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7.28.) : 2020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사유 : 전남대학교 용봉관 증개축 내력 자료 보완
 - ('20.9.16.) : 보완자료 제출(전남대 → 문화재청)
 - ('20.10.27.) : 2020년 제9차 근대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4) 등록예고 : '20.11.6 ~ 12.7.(30일간) * 의견 없음

8.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현대문화유산 소방안전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사된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9~12월)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소방 헬기 ‘까치2호’	1건 1점	○기장: 949cm ○기폭: 150cm ○기고: 354cm	1979년	보라매 안전체험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천 비인 소방 사이렌탑	1건 2점 (탑1, 사이렌1)	○사이렌: 32×48cm ○사이렌탑 -높이:10.4m -기단: 170×170cm	미상	서천소방서	충남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1 비인119안전센터
국산 소방 완용 펌프	1건 1점	○높이: 140cm ○길이:245cm ○너비: 60cm	1950년대	안양소방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 안양소방서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소방안전 분야 목록화 조사
- ('20.9.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서천 비인 소방 사이렌탑)
- ('20.11.27.)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소방 헬기 ‘까치2호’)
- ('20.12.7.)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국산 소방 완용펌프)

9. 「윤정사 오층석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윤정사 오층석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윤정사 오층석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10.30.)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6.23.)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윤정사 오층석탑	1건 1점	높이 213cm	1920~30년 대 추정	윤정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250-31 윤정사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10.30.)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문화재청)
- ('20.6.2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10. 「제주시 일도일동 고한봉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시 일도일동 고한봉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시 일도일동 고한봉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4.7.24.)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4.)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시 일도일동 고한봉 가옥」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43-1, 1243-5
 - 소 유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수 량 : 2동(1층)
 - 건축면적 : 109.08m²
 - 연 면 적 : 109.08m²
 - 건축년도 : 1949년 8월 7일
 - 구 조 : 목조 기와 지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4.7.24.)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15.4.7.)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5.8.20.) : 추가자료 제출 요청(문화재청 → 제주특별자치도)
 - * 요청자료 : 도내 동일 유형 가옥의 분포현황
 - ('20.11.17.) : 자료보완 후 관계전문가 추가 현지조사 실시

11. 「김재식 가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김재식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재식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6.25.)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김재식 가옥」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28
 - 소 유 자 : 문화유산 한옥(주)
 - 수 량 : 3동
 - 건축면적 : 272.11m²
 - 연 면 적 : 272.11m²
 - 건축년도 : 1904년(추정)
 - 구 조 : 한식 목구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6.25.)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세종특별자치시 → 문화재청)
 - ('20.1.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1.30.) : 보완자료 제출 요청(문화재청 → 세종특별자치시)
 - ('20.8.31) : 보완자료 제출(세종특별자치시 → 문화재청)

12.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시설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3.10.2. / '20.12.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13.1.21.) : '보류' (시설물 전체 조사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도로공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230)
- (2) 대상문화재 : 옥천 당재육교, 옥천 당재터널 등 2건

연번	명 칭	소재지	소유자	규모
1	옥천 당재육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727-2 일원	국토교통부	- 연 장 : 174m - 교 폭 : 19.9m - 높 이 : 23m
2	옥천 당재터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3-2 일원, 청성면 묘금리 산71-4 일원	국토교통부	- 연 장 : 상행 585m, 하행 550m - 너 비 : 11.5m - 높 이 : 8.3m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4) 추진경과

- ('13.9.1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옥천군 → 문화재청)
- ('13.10.2.)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3.10.15.) : 제5차 근대분과 위원회(보류)
 - 사유 :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전체 조사 후 재검토
- ('20.12.2.)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현지조사 실시

13.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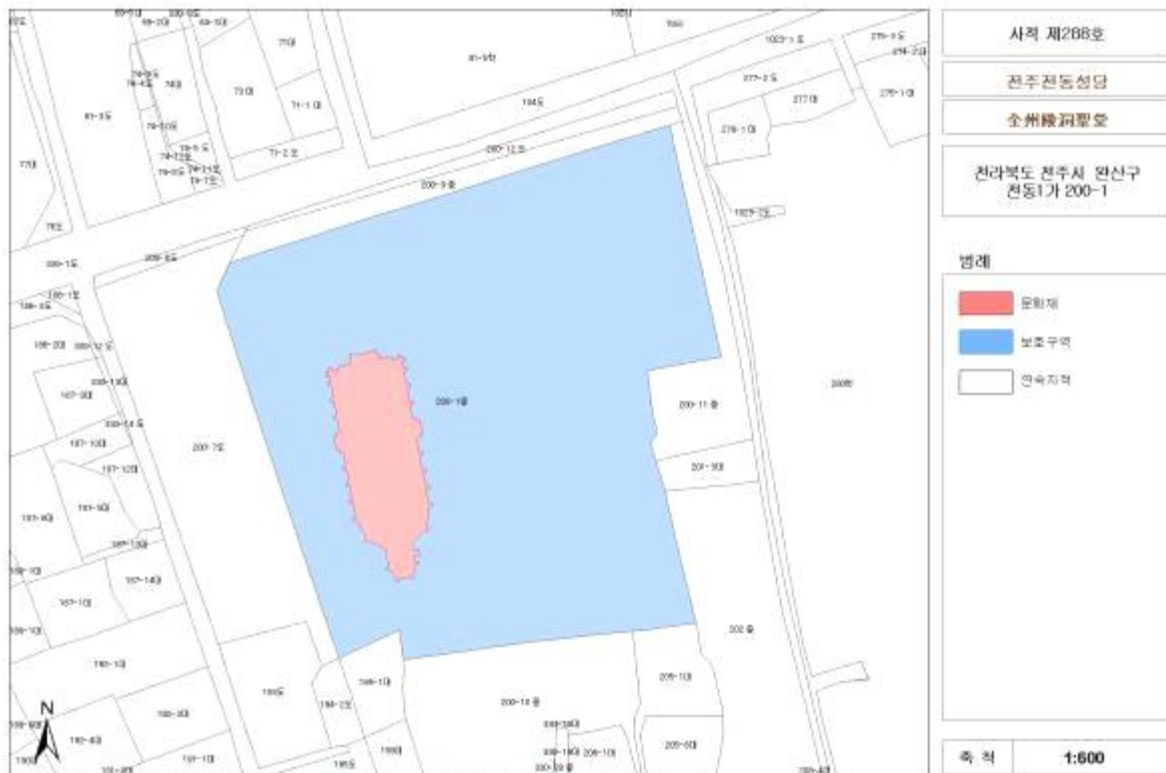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전주 전동성당」 (사적 제288호, '81.9.25.)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 소유자(관리자) : (재)전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 지정구역/보호구역 : 625㎡/7,184㎡
 - 지정현황도면



(2) 추진경과

-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 142,000천원(국비 99,400, 지방비 42,600)
- (2019. 1월) 용역 착수보고
- (2019. 9월) 용역 1차 보고
- (2020. 4월) 용역 2차 보고

(3)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전동성당 구역 (13,381㎡)	성심학교 구역 (21,190㎡)	주변 구역 (14,587㎡)
2021~2023년	2023~2028년	2026년 이후
3,870백만원	6,457백만원	30,369백만원
• 한국천주교 순교역사기념관 (현 사제관 리모델링) • 녹화 정원 및 광장 (바오로 쉼터 및 순교자 광장) • 교통환경 개선 (현 주출입구를 보행자 전용으로 변경)	• 신앙공동체 생활문화체험관 • 호남교회사연구소 • 문예 창작 공간 • 민속박물관 • 보조성당 복합시설 • 경관 녹화 개선(중정 쉼터)	• 확장부지 매입 • 옛 성당복원 • 테마정원 • 민속체험놀이마당 • 치유와 명상의 숲 • 주변연계강화

※ 소요 사업비 : 40,617백만원

<전주 전동성당 정비 및 배치 구상>



14. 국가등록문화재(동산 분야)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동산)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추진경과

- ('19.7.15./9.5.)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자문회의
- ('19.11.14.) 제7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 * 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 9건 선정
- ('20.7.29/8.18./8.26./9.3.) 관계전문가 지정 조사 실시(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 ('20.10.8.) 제5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 ('20.10.30.~11.29.) 문화재 지정 예고
- ('20.12.10.) 제7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12.22 예정) 문화재 지정 및 고시

라. 추진결과

- '말모이 원고'(제523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제524-1·2호) 보물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따라 보물 지정 대상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해제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수량	규격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제523호 (‘12.12.24.)	말모이 원고 (말모이 原稿)	1책	23.7×17.2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제524-1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12책 중 8책 (2,204장)	27.0 × 19.3 등	(사)한글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사)한글학회
제524-2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5책 (1,314장)	27.5× 19.6 등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 제542-1호는 12권 중 전사본(4권)을 제외한 8권을 보물 지정 고시

** 별도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개인 소장본(1권) 추가 지정 예정

라. 추진일정

- 미지정 조선말 큰사전 원고 4권에 대한 조사 실시('20.1월 중)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보고

가. 보고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7호 인천답동 성당	인천 중구	○○○	<인천 답동성당 주변 공동주택 신축/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1) 허가 받는 자 : ○○○ (2) 허가내용 : 허가번호 제2019-1012호 내용과 동일 ○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 규모 : 최고높이 87.25m, 최고층수 22층(103동, 104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3) 허가기간 ○ '21.6.1. ~ '24.6.30. ※ 최초 허가기간 : '19.9.25.~'20.9.25.	허가	'20.11.27.